

[별표6]

###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기준(제25조 관련)

구 분	1급지			2급지			3급지	4급지
	1-1지역	1-2지역	1-3지역	2-1지역	2-2지역	2-3지역		
대부 상한액	3.6억원	3.1억원	2.8억원	2.2억원	1.8억원	1.5억원	1.4억원	1.2억원

1. 급지 적용은 별표4의 급지에 따른다.
2. 지원금액은 관리부대에서 정한 근무지역내의 임대차주택 소재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